

사례 7

부비강입구부경검사와 동시 산정된

나754 비인강경검사

■ 청구사례 (14세/남)

- 외래 내원일수: 1일
- 상병명: 급성후두염, 아데노이드의 비대를 동반한 편도의 비대
- 주요 청구내역

[검사료]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(E7550) 1*1*1

나754 비인강경검사1*1*1(E7540) ▶ 조정

■ 심사결과

- 관련 근거에 의하면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와 동시 산정된 나754 비인강경검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
 - 동 사례는 나754 비인강경검사를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와 동시에 산정하여 조정함

<관련 근거>

- 나754 비인강경검사를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 또는 나756 부비동내경검사와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9호, 2020.2.1.시행)
 - 나754 비인강경검사를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 또는 나756 부비동내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 중복검사로 보아 나754 비인강경검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